



제 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공체육시설 대부계약 규정 신설 〉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95호)

2025. 1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공체육시설 대부계약 규정 신설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장철민의원 등 17인
2. 발 의 일: 2025. 11. 14.
3. 회 부 일: 2025. 11.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의 확보 및 운영, 민간시설의 건전한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 등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 책임분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간 책임 전가 및 불리한 계약 변경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프로구단 등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그 계약에 안전관리 책임, 사고 발생 시 책임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대부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공체육시설 대부계약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프로구단 등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그 계약에 안전관리 책임,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4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4(공공체육시설의 대부계약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그 계약은 상호 간 권리·의무,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 발생 시 손해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체육단체에 일방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체육

	<u>시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	---

- 최근 프로야구장 시설구조물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5년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는 구조물 낙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등에서 연달아 시설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음.

[2025년 프로야구장 시설 사고 현황]

장소	일시	사고내용	피해상황
창원NC파크	2025.3.29.	루버 구조물 추락	사망 1명, 부상 2명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2025.7.27.	간판 볼트 탈락	인명피해 없음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2025.9.17.	그물망 기둥 넘어짐	인명피해 없음

- 이에 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프로야구장 합동점검을 2025년 8월과 10월 2차례 실시하였으며, 이후 다중이용 체육시설 유지관리방안 워크숍 개최 등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 이러한 프로야구장은 각 야구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야구구단이 이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

리주체¹⁾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²⁾로서 체육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를 할 책임을 지며, 야구구단은 야구장을 사용하는 자로서 대부계약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야구장의 보존책임 등을 지게 됨.

○ 그러나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 책임분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 간 책임 전가 및 불리한 계약 변경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프로야구장 시설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 회피 논란이 이슈가 된바 있음³⁾⁴⁾.

○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 관

-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시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3) 손찬익, 「창원NC파크 구조물 전수 점검 시작… NC는 동분서주하는데 창원시·시설공단은 뒷짐? [오!쎈 창원]」, OSEN, 다음뉴스, 2025. 4. 1.
- 4) 이성훈, 「대전시, "야구장 안전 관리, 한화가 책임져라"」, SBS, 2025. 7. 30.

리 조례 등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는 대부계약서 양식의 경우 임차인의 보존책임등만 규정되어 있으며, 임대인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안전 등과 관련된 책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⁵⁾.

- 개정안은 법률상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대부계약된 체육시설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하고,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주요 이해관계자인 주민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안전문제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대부계약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개정안에서 의도한 프로야구장 등 체육시설은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대부계약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야구구단이 사용할 수 있게 됨. 따라서 체육시설의 계약에 대해 규정하려는 경우 체육단체에 사용허가를 하게 하는 경우로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은 「국가

5) 참고자료2: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양식 참고. 해당 양식은 지방자치단체 대부계약서 양식과 그 내용이 대부분 유사함.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법률에서는 계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고, 위험부담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백히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법률상 계약서 작성원칙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사용수익허가서 양식⁶⁾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허가,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양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개정안 제13조의4제3항은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무엇인지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 대부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서식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안 제13조의4에서 요구하는 위험부담 사항은 해당 서식을 개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국

6) 참고자료3: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양식 참고. 해당 양식은 지방자치단체 사용허가서 양식과 그 내용이 대부분 유사함.

유재산법」 등은 해당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해당 법률들은 불공정계약 금지, 계약서 작성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개정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임.

- 경상남도 교육청은 학교체육시설의 경우 행정재산이므로 대부분 계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사용·수익을 포함할 필요가 있고, 공정한 체결이라는 문구가 모호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안전관리 책임 소재와 사고 발생 시 손해 분담 등을 포함한 계약 체결 조항 신설은 적정하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시에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개정안과 같이 계약서 상 손해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면, 관리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분담 의무가 적용되면 지자체의 시설대부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1: 개정안 관련 참고조항

1.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 6. (생략)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 11. (생략)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 ③ (생략)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 ② (생략)

③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 6. (생략)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 ⑤ (생략)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 ③ (생략)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참고자료2: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양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1. 26.>

국유재산 [] 유상 대부계약서 [] 무상

(제2쪽 중 제1쪽)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대부료 금 원을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대부보증금은 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년 월 일까지 대부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며, 납부 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 대부기간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통상의 수선에 드는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대부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대부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담한 보험료를 대부받는 자가 내야 한다.

제7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
3.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제8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대부받는 자가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에 따라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5. 대부받는 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6. 대부받는 자가 대부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7. 대부받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9.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보상) ① 제8조의 경우에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가 과납한 금액을 반환하며, 제8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 밖에 대부받는 자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보상액은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권리금과 장래의 기대수익 등은 보상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청구) 이 계약기간 중 대부받는 자가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가 과납한 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재산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대부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계약의 갱신 신청) 대부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대부받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 대부받는 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대부받는 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대부재산의 제3자 매각) ①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1개월 전까지 대부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부재산이 대부받는 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대부받는 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등의 징수) ① 대부받는 자가 대부기간의 만료나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대부자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대부받는 자가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대부자가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대부받는 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부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대부받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

③ 대부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가 낸 대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받는 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자

중앙관서의 장등

인

대부받는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참고자료3: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양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 26.>

국유재산 [] 유상
[] 무상 사용허가서

(제2쪽 중 제1쪽)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그 사용·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중앙관서의 장

직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우리 부(처·청)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우리 부(처·청)가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우리 부(처·청)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우리 부(처·청)가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 사용허가기간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고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거부)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는 재산에 대하여 우리 부(처·청)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부(처·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부(처·청)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우리 부(처·청)가 부담한 보험료를 사용인이 내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본인의 비용으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재산의 공과금 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우리 부(처·청)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재산의 원상 변경
3. 사용허가재산에의 시설물 설치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4.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우리 부(처·청)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보상)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부(처·청)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받으려면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부(처·청) 직원의 참여하에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우리 부(처·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사용허가의 갱신 신청)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금 등의 징수) ① 사용인이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우리 부(처·청)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우리 부(처·청)가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인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우리 부(처·청)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우리 부(처·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재산에 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우리 부(처·청)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허가서의 해석) 이 허가서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우리 부(처·청)의 해석에 따른다.

주: 중앙관서의 장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